

이주현 노무사 「핵심정리 사회보험법」
제10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(2025-02-25)

P.34 표 내용 수정

<기준>

적용제외사업 노1013~15 18~20224	농업·임업·어업·수렵업 중 법인 아닌자 의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(농림어업근로자) (단, 본인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 可 ⇒ ※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고, 있으면 사업주가 가입신청서 제출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<수정>

적용제외사업 노1013~15 18~20224	농업·임업·어업 중 법인 아닌자 의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(농림어업근로자) (단, 본인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 可 ⇒ ※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고, 있으면 사업주가 가입신청서 제출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P.43 표 내용 수정

<기준>

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	지원 금액	①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	고시금액 × 출,유,육,육단의 사용기간 개월 수 (단, 50%는 지원요건 갖추면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)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

<수정>

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	지원 금액	①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	고시금액 × 육,육단의 사용기간 개월 수 (단, 50%는 지원요건 갖추면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)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

P.62 표 내용 수정

<기준>

급여감액	출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
------	---

<수정>

급여감액	출산휴가기간, 유산휴가기간, 배우자출산휴가기간, 난임치료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
------	--

P.68 표 내용 수정

<기존>

출산전후급여	지급기간	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)로 하되,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에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) 이상 (※유산의 경우도 임신기간에 따라 지급)
--------	------	---

<수정>

출산전후급여	지급기간	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다음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, 출산후에 45일 이상(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60일)이 되도록 할 것 • 원칙 : 90일 • 미숙아 : 100일 • 한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 : 120일
--------	------	---

P.68 표 내용 수정

<기존>

출산전후급여	유산·사산 노 ^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•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•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•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•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<수정>

출산전후급여	유산·사산 노 ^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•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•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•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P.71 표 내용 수정

<기존>

출산전후급여	지급기간 (예술인과 동일)	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)로 하되,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에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) 이상 (※유산의 경우도 임신기간에 따라 지급)
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

<수정>

출산전후급여	지급기간 (예술인과 동일)	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다음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, 출산후에 45일 이상(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60일)이 되도록 할 것 • 원칙 : 90일 • 미숙아 : 100일 • 한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 : 120일
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

P.109 표 내용 수정

<기존>

<p>적용특례</p>	<p>노무제공자 노9①②④⑤⑦ ⑧⑩⑪⑫</p>	<p>대통령령 직종</p>	<p>① 보험설계사 ②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√ ③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④ 학습지방문강사,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⑤ 택배원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의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or배송업무(설치수반 배송 포함)하는 사람 √ ⑥ 택배원으로서 기타 택배사업(소화물을 집화, 수송 과정 거쳐 배송하는 사업)에서 집화or배송업무하는 사람 ⑦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 의뢰받아 배송업무하는 사람 ... ⑤ ⑤ 화물차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√ - 화물자동차 -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</p>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수정>

<p>적용특례</p>	<p>노무제공자 노9①②④⑤⑦ ⑧⑩⑪⑫</p>	<p>대통령령 직종</p>	<p>① 보험설계사 ②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√ ③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④ 학습 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⑤ 택배원or그외배달원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의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or배송업무(설치수반 배송 포함)하는 사람 √ ⑥ 택배원or그외배달원으로서 기타 택배사업(소화물을 집화, 수송 과정 거쳐 배송하는 사업)에서 집화or배송업무하는 사람 ⑦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 의뢰받아 배송업무하는 사람 ... ⑤ ⑤ 화물차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√ - 화물자동차 -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</p>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P.318 조문내용 수정

〈기존〉

85 ② 13주는 12주 이상 15주 이내에 해당하므로 10일(고보령 §104의9)

고보령 §104의9

2.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

- 가.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
- 나.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
- 다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
- 라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
- 마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

〈수정〉

85 ② 13주는 12주 이상 15주 이내에 해당하므로 10일(고보령 §104의9)

고보령 §104의9

2.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

- 가.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
- 나. 삭제
- 다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
- 라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
- 마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